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7
------	-----

2012. 10. 8.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0.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가. 제안이유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

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기관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설립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해

- 금번 수탁기관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있는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위탁주요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3 ~ 2016. 2)
- 위탁업무 : - 서울시 직업훈련 사업
- 취업촉진지원 및 지역활동지원 사업
- 학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 기타 학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연간 약 5,536백만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기술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이하 “북부기술교육원”)이 2013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북부기술교육원 개요 및 운영현황

- 북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이하 “시”)가 설립해 운영중인 4개 기술교육원 가운데 가장 늦은 1990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시의 북부지역 직업훈련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음.

〈위탁대상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길 70가 81
- 규 모 : 대지 10,486.50 m^2 , 건물 12,611.36 m^2
- 주요시설: 본관, 교육관3(사무실, 훈련관, 실습실 등)
- 조 직 : 2부 4팀 35명
- 훈련과정: 정규과정(2개분야 21개 학과), 단기과정(3개분야 6개 학과)

- 북부기술교육원은 매년 1,144명의 교육생이 입학해 평균 90% 이상의 수료율, 75% 이상의 자격증 취득율, 80% 정도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음(참고자료).
- 북부기술교육원은 개원초기 ‘공생복지재단’ 이 위탁운영 하였으며, 2001년 공모를 통해 현재 운영자인 ‘한국능력개발원’으로 운영자가 변경된 후 3차례 재계약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한국능력개발원’은 1992년 설립된 전문직업훈련기관으로 현재 북부기술교육원을 비롯한 3개 직업훈련기관과 방과 후 학교 사업 등을 수행하는 1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판단

- 직업훈련교육은 전문기능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각종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운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직업훈련을 받는 교육생들의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만큼 직업훈련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기관의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다행스럽게도 국내에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관의 직업훈련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취업률과 같은 비교적 계량화된 지표로 드러나고 있어 위탁자 선정에 대한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유로운 공개 경쟁을 통해 가장 적절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혹은 입학을 원하는 예비 교육생들의 교육훈련에 방해가 되거나 2013년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선정시기 등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57
----------	-----

제출년월일 : 2012년 8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설립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해
- 금번 수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있는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81
- 시설규모 : 대지 10,486㎡, 건물 12,611㎡(본관, 교육 1~3관)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3 ~ 2016. 2)
- 위탁업무
 - 서울시 직업훈련 사업

- 취업촉진지원 및 지역활동지원 사업
- 학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 기타 학교의 관리·운영에 전반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연간 약 5,536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현황
 - 1989. 10. : 최초 민간위탁 실시(공생복지재단)
 - 2001. 3 : 위탁업체 공모 선정 (한국능력개발원으로 변경)
 - 2004. 3 : 3년 재계약(1차, 한국능력개발원)
 - 2007. 3 : 3년 재계약(2차, 한국능력개발원)
 - 2010. 3 : 3년 재계약(3차, 한국능력개발원)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직업훈련사업은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도의 기능인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 훈련장비 조작, 교육재료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함
- 또한, 전문민간 훈련기관들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취업률 제고와 직업훈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향후 추진일정

- '12. 10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2. 11월 : 수탁자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12. 12월 : 적격자심의회 개최 및 선정
- '13. 1월 : 민간위탁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13. 3월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개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 제1항(직업교육훈련의 위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1항(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선정계획」
(일자리정책과 - 10451, 2012. 8. 8)